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8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8월 30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9월 7일

제2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권 순 서

나. 제안이유

- 서울 구미학숙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함으로써,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지역출신 우수 인재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면학 여건을 조성하여, 구미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어형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출연 개요

- 대 상 기 관 : (재)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
-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2길 30(동선동)
- 출연예정액 : 150백만원(운영비 150백만원)

○ 주요 사업

-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
 - 운 영 비 : 300백만원(출연금 150백만원, 입사생수입 150백만원)
 - 운영내용 : 인건비, 운영비, 제세공과금 등

○ 출자·출연의 필요성

- 안정적인 주거와 면학 환경을 제공함으로써, 입사생 편의를 확대하고 학숙 운영을 효율화하여
- 지역 인재육성 및 학부모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「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 제7조

○ 예산조치 : 2018년도 예산편성

○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○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근 도

○ 본 『(재)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』은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(재)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에 대한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- 「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 제7조에 기금 출연의 근거가 있고 서울 구미학숙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 인재육성 및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자 (재)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에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